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제3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한 경우
여비·일당·숙박료 청구권 부여 〉

■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856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12.
3. 회 부 일 : 2025. 3.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무부 훈령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및 경찰청 훈령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에 따라 이렇게 출석한 참고인에게 여비, 일당, 숙박료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그런데 증인과 감정인의 경우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하여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반면, 참고인의 경우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 등을 통해 “소정의 여비를 지급한다”고만 안내받고 있으므로 본인이 교통비나 식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도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고 법에 명기함으로써 비용 지급에

관한 내용을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참고인의 출석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 협력을 독려하려는 것임 (안 제221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검사·사법경찰관의 요구로 출석한 제3자도 법률에 따라 여비·일당·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되, 허위진술이나 진술거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1조제4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현행법 제221조¹⁾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제3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음. 다만, 법원에서 증인 등 출석을 요구한 경우에는 일당·여비·숙박료를 지급하도록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²⁾에 명시적 규정

1)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

이 있는 것과 달리,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제3자 출석을 요구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별도 규정이 없음.

이에 현재는 각 수사기관별 훈령·예규 등에 규정하여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³⁾ 이로 인해 일반 국민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경우 각종 비용청구가 가능한지 명확히 알기 어렵고, 수사기관마다 세부 지급액수에도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853호)이 수사기관이

서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2.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그 밖의 비용
3.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3) [각 수사기관별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관련 규정]

기관	행정규칙	비용 산정 규정 예시(여비·일당·숙박료·식비)
검찰청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법무부훈령)	제3조(여비, 일당, 숙박료 및 식비) ①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하고, 여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2"중"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사, 수사관, 보호사안조사공무원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예규)	제3조(운임, 일당, 숙박비 및 식비) ①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한다. ② 운임, 숙박비 및 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를 준용하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 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찰청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경찰청 훈령)	제4조(여비·숙박료·식비) 참고인등의 여비, 숙박료, 식비는 소요비용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해양 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4조(지급기준) ① 제3조제1호의 비용은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2의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출석을 요구한 경우에 여비 등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동법에 명시함을 전제로, 「형사소송법」에도 제3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경우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일당·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개정안 단서는 수사기관에 출석한 제3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법률에 제3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한 경우 비용청구권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허위진술·진술거부 시 예외를 명시함으로써, 비용청구권이 법률상 권리라는 점을 국민이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형사진행절차에 대한 협력을 독려하여 수사상 진술의 원활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가 인정된다고 봄.

다만,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853호)의 의결을 전제하므로, 그 심사경과에 맞추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48